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65
------------	---------

제출연월일	2003. 11.
제 출 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장 설비를 구비한 하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함.
- 2005. 1. 1 공기업 전환 업무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하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사업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안 제3조)
-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안 제4조)
-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안 제5조)
-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안 제7조)
-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함(안 제9조)
-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안 제12조)
-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6조)
-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8조)
-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9조)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 제정근거

- 군수방침(2002. 12)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 3 조 (사업구역) 거창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 5 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6 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0 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11 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 12 조 (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화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 13 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 14 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예산의 집행규정)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②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거창군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 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7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8 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